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00. 00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22087호, 2026.10.20. 공포, 2027.1.21. 시행)됨에 따라, 직권 신청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직권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부터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까지를 각각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로 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급여의 신청 등)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“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미성년자인 경우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
3. 그 밖에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
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가 최근 1년 이내에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로 3회

이상 발굴된 경우

2.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가구의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

3. 수급권자가 최근 1년 이내에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

4. 수급권자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의2(종전의 제36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3(종전의 제36조의2)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“부양의무자”를 “부양의무자(다만,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만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금융정보등의 범위) (생 략)	제36조(급여의 신청 등)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“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미성년자인 경우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3. 그 밖에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가 최근 1년 이내에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로 3회 이상

현 행	개 정 안
	발굴된 경우 2.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가구의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3. 수급권자가 최근 1년 이내에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4. 수급권자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제36조(금융정보등의 범위)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,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이라 한다)의 범	제36조의2(금융정보등의 범위) 법 제21조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생략) <u>제36조의2</u>(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) ① 법 <u>제23조의2</u>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(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수급권자,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1. 수급권자, 수급자 및 <u>부양의무자</u>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. (생략) ② (생략) 1. 수급권자,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<u>주민등록번호</u>	-----. (생략) <u>제36조의3</u>(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) ① 법 <u>제23조의2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수급권자, 수급자 및 <u>부양의무자</u>(다만, 법 <u>제23조의2제2항</u>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만을 말한다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수급권자, 수급자 및 <u>부양의무자</u>(다만, 법 <u>제23조의2제2항</u>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만을 말한다)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

현행	개정안
2. ~ 4. (생략) ③ (생략)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,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. (생략) <u>제36조의3</u>(금융의 대리수령 범위 등)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(생략) <u>제36조의4</u>(금융의 대리수령 범위 등) (현행과 같음)